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-692호

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·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년 8월 3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##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공용·공공용의 청사·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·지원토록 「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·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제14조에 규정한 존속기한 변경
  -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·시설부지 매입기금 존속기한을 “2016년 12월 31일”에서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변경

### **3. 의견제출**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참조: 재무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), 문의전화: 3396-5002, FAX: 3396-8670, 메일: [gigusarang@junggu.seoul.kr](mailto:gigusarang@junggu.seoul.kr)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 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·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2. 신·구조문 대조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 
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 
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중 “2016년 12월 31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4조(존속기한)</b>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6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하되,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4조(존속기한)</b> ----- <u>2021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